

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곽영학

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20년 5월 29일
- 회부일자 : 2020년 5월 29일

3. 제안이유

- 사무처리 효율화를 위한 신규 위임사무, 근거 법조항 개정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변동사항을 정비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신 설 : 3건(별표 1)

<근거법령개정에 따른 신설 3건>

- (균형발전과) 이미 결정된 도시·군 계획시설의 세부시설 변경(1건)
- (기후대기과) 대기관리권역 내 환경부령으로 정한 가정용 보일러의 의무설치에 대한 업무(2건)
 - '가정용 보일러의 제조·판매, 사용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' 사무 신설
 - '대기관리권역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조치 명령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' 사무 신설

- 삭 제 : 1건(별표 1)

<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삭제 1건>

- (균형발전과) 도시·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 대상 기반시설 업무
 - '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' 삭제

○ 그 밖의 개정사항 : 3건(별표 1)

<위임사무명 개정 : 1건>

- (균형발전과) 도시·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 대상 기반시설
 -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→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

<근거 법조항 개정 : 1건>

- (균형발전과) '도시·군관리계획 결정의 실효 고시' 사무
 -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3조, 제48조, 제53조
 -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, 제53조, 제88조,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

<부서 명칭변경 : 1건>

- 수질관리과 → 수자원관리과

5. 검토의견

이 개정조례안은 사무처리 효율화를 위한 신규 위임사무, 근거 법조항 개정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변동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

주요 내용은 첫째, 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균형발전과의 '이미 결정된 도시·군 계획시설의 세부시설 변경'과 기후대기과의

‘가정용 보일러의 제조·판매, 사용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’와 ‘대기관리권역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조치 명령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’ 사무를 신설하고,

둘째, 균형발전과의 도시·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 대상 기반 시설중 ‘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’ 부분을 근거법령 개정에 따라 삭제하고,

셋째, 균형발전과의 위임사무명 1건과 근거 법조항 1건을 개정하고 수자원관리과의 부서명칭을 변경하는 것임.

이 개정조례안은 사무처리 효율화를 위한 신규 위임사무, 근거 법조항 개정, 위임사무명 개정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변동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붙임: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. 끝.